제325회 정례회 2013. 12. 20.(금)

심사보고서

○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

「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3. 12. 20.(금) 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정지숙 의원 외 6명

나. 제출일자 : 2013년 11월 29일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12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12월 10일

-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 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지숙 의원)

1. 제안사유

O 충북도립교향악단의 발전을 위하여 능력과 실력있는 예술감독을 채용하기 위하여 예술감독의 겸직금지조항을 삭제하고, 비상임단원의 상임단원화에 따라 비상임단원을 삭제하고,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O 악단과 사무국의 설치(안 제2조제2항과 제3항)
- O 단원의 구분(안 제4조)
 - 단원은 악장, 수석단원 및 정단원으로 구성
 - 지휘자는 예술감독이 겸함.
- 겸직금지의 변경(안제12조제1항)
 - 예술감독의 겸직금지 삭제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: 한철우)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향악단의 발전을 위하여 능력과 실력을 가진 예술감독을 채용하기 위하여 예술감독의 겸직금지 조항을 삭제하고, 비상임단원의 상임단원화에 따른 비상임단원 을 삭제하고, 이에 따른 상임단원의 명칭변경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음"
- 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정지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7

발의연월일 : 2013년 11월 29일

발 의 자:정지숙,김희수,심기보

김봉회, 김형근, 임 현

김도경 의원

1. 개정이유

충북도립교향악단의 발전을 위하여 능력과 실력있는 예술감독을 채용하기 위하여 예술감독의 겸직금지조항을 삭제하고, 비상임단원의 상임단원화에 따라 비상임단원을 삭제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 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악단과 사무국의 설치(안 제2조제2항과 제3항)
- 나. 단원의 구분(안 제4조)
 - 단원은 악장, 수석단원 및 정단원으로 구성
 - 지휘자는 예술감독이 겸함.
- 다. 겸직금지의 변경(안제12조제1항)
 - 예술감독의 겸직금지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해당 없음.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2조(구성) ① 충청북도립교향악단(이하 "교향악단"이라 한다)의 단 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단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.
 - ② 교향악단에는 악단과 사무국을 둔다.
 - ③ 악단은 연주를 담당하며, 사무국은 사무처리 등을 담당한다.
 - ④ 교향악단의 정원은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3조제1항 중 "단원과 사무직원(이하""직원"이라 한다)"을 "악단원 (이하 "단원"이라 한다)과 사무국직원(이하""직원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④ 지휘자는 단원의 기량 연마와 공연기획·제작 등 공연업무를 총 괄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4조(단원의 구분) ① 단원은 악장, 수석단원 및 정단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지휘자는 예술감독이 겸한다.
- 제5조제3항 본문 중 "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"을 "단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.

- 제6조제1항 중 "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위촉과 단원의 평정"을 "단원의 위촉과 평정을"로 한다.
- 제9조 제목을 "(위촉기간 및 연령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③ 위촉연령은 만 58세 이하로 한다.
-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① 단원과 직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혅 했 개 정 안

제2조(구성) ①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제2조(구성) ① 충청북도립교향악단 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.

- ② 교향악단에는 사무처리 등을 담 당할 사무국을 둔다.
- ③ 교향악단의 정원은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.

제3조(단장 등의 직무) ① 단장은 교 제3조(단장 등의 직무) ① 단장은 교 향악단을 대표하며, 충청북도지사 아 교향악단을 총괄하고 단원과 사 무직원(이하 "직원"이라 한다)을 지휘·감독한다.

- ② ~ ③ (생략)
- ④ 지휘자는 단원의 기량 연마와 공연기획·제작 등 공연업무를 총괄 하며, 지휘자와 예술감독은 겸한다. ⑤ (생략)

(이하 "교향악단"이라 한다)의 단장 (이하 "교향악단"이라 한다)의 단장 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단장은 문 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단장은 문 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.

- ② 교향악단에는 악단과 사무국을 둔다.
- ③ 악단은 연주를 담당하며, 사무국 은 사무처리 등을 담당한다.
- ④ 교향악단의 정원은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.

향악단을 대표하며, 충청북도지사 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의 명을 받 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의 명을 받 아 교향악단을 총괄하고 악단원(이 하 "단원"이라 한다)과 사무국직원 (이하 "직원"이라 한다)을 지휘·감 독한다.

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지휘자는 단원의 기량 연마와 공연기획·제작 등 공연업무를 총괄 하다.
- ⑤ (현행과 같음)

제4조(단원의 구분) ① 단원은 예술 제4조(단원의 구분) ① 단원은 악장,

감독,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으로 수석단원 및 정단원으로 구성한다. 구성하다.

- ② 상임단원은 공연에 출연하는 상 ② 지휘자는 예술감독이 겸한다. 시근무자를 말한다.
- ③ 비상임단원은 주 3일 이상 근무 하며 연주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.

제5조(자격과 위촉) ① ~ ② (생략)

③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은 음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갖 춘 자 중 공개전형을 거쳐 도지사 가 위촉한다. 다만, 국·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와 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. ④ 도지사는 예술분야의 식견이 풍 부하고 교향악단 운영과 관련한 능 력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위촉한다. ⑤ 도지사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무국 장으로 위촉한다.

제6조(전형위원회) ① 상임단원 및 비 제6조(전형위원회) ① 단원의 위촉과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.

② ~ ③ (생략)

제9조(위촉기간) ① ~ ② (생략)

제5조(자격과 위촉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단원은 음악분야에 대한 전문지 식과 기량을 갖춘 자 중 공개전형 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. 다만, 국·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④ (현행 제5)항과 같음)

⑤ (현행 제④항과 같음)

상임단원의 위촉과 단원의 평정을 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. ② ~ ③ (생략)

> 제9조(위촉기간 및 연령) ① ~ ② (현 행과 같음)

(신설)

③ 위촉연령은 만 58세 이하로 한 다.

제12조(겸직금지 및 복무 등) ① 예술 제12조(겸직금지 및 복무 등) ① 단원 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 없다. 다만,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감독, 상임단원, 직원은 단장의 사 과 직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

② ~ ③ (생략)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